

#### [서식 예]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(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)

#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

신 청 인 ㅇㅇ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관련본안사건: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가단ㅇㅇㅇ 청구이의

## 신 청 취 지

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공증인가 ○○○법무법인 20○○년 증서 제○○○호, 20○○년 증서 제○○○○호의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(20○○타경○○○)은, 위 당사자 사이의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가단○○○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.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원 인

- 1.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관계
  - 가. 신청인의 아내인 소외 ◉◉◉는 20○○. ○. ○. 피신청인이 계주인 소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금 ○○○원의 계금을 불입하기로 하였습니다(그 뒤에



는 신청인이 직접 계에 관여하였음). 한편,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©©©도 위 낙찰계의 계원이었습니다.

나. 그러던 중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◎◎◎가 20○○. ○. ○. 금 ○○○만원의 계금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, 추후의 계금체납을 우려한 피신청인의 요구로 신청인과 소외 ◎◎◎의 남편인 소외 ■■■는 계금체납에 대한 보증의의미로 소외 ◎◎◎와 공동발행인이 되어 액면 금 ○○○○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고,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○○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주었습니다.(소갑 제1호증의 1)

한편, 신청인은 20○○. ○. ○.(곗날은 매월 19일임) 금 ○○○만원을 계금으로 낙찰 받게 되었는데, 역시 추후의 계금체납을 우려한 피신청인의 요구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 소외 ⑥⑥⑥를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 금 ○○○○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, 20○○. ○. ○. 이에 대하여 ○○○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주었습니다.(소갑 제1호증의 2)

#### 2. 계금의 불입

가. 신청인의 계금불입 내역

신청인은 위 금 ○○○만원의 계금을 탄 뒤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20○○. ○.까지 계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.

① 무통장입금을 통한 계금불입

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소갑 제2호증의 19(그 중 소갑 제2호증의 8은 금 ○○○만원)에서 나타나 있듯 신청인은 무통장입금으로 금 ○○○만원(금 ○○○원×20회)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.

② 직접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불입한 금액

소갑 제3호증은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◎◎◎의 계원카드인데, 직접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납입을 하여 피신청인이 확인을 해준 카드입니다. 소갑 제3호증 상단에 보면 ○○○원이 적혀있고 그 옆에는 ○○○원이 적혀 있으며, 날인을 해주기도 하고 그냥 숫자로 써주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은 완납이라고 적혀 있는바, 모두 11회를 납부하였는데, 그 납입액은 모두 금 ○○○만원 {(금 ○○○원×4)+(금 ○○○원×7)}에 이릅니다. 한편, 위 금액 가운데 금 ○○○원은 피신청인의 계금납입도 포함된 것으로 편의상 소외 ◎◎◎의 계원카드에 기록된 것입니다.

③ 신청인의 계불입금 총액 결국 신청인은 총 금 ○○○만원(금 ○○○만원+금 ○○○만원)의 계금을



납입하였습니다.

- 나.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◎◎◎의 계급불입 내역
- ① 무통장입금을 통한 계금불입 소갑 제2호증의 20 내지 23에서 나타나듯이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◎◎◎는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금 ○○○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.
- ②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직접 불입한 금액 위 2의가②에서 보다시피 소외 ◎◎◎는 피신청인에게 직접 금 ○○○만원 (금 ○○○○만원-금 ○○○만원)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.
- ③ 소외 ◎◎◎의 계불입금 총액 결국 소외 ◎◎◎는 총액 금 ○○○○만원(금 ○○○만원+금 ○○○○만원)의 계 금을 납입하였습니다.
- 3.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 위에서 보다시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계금체납을 대비해 발행한 약속어음금 ○ ○ 만원을 금 ○ ○ 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

또한,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◎◎◎는 그 계금체납을 대비해 신청인이 공동발행한 약속어음금 ○○○○만원에 금 ○○○만원정도 못미치는 금 ○○○○만원의 계금을 납부하였습니다.

결국 위 어음채권의 합산액인 금 ○○○○만원을 초과한 금 ○○○○만원의 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

- 4. 오히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○○○만원의 계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사건 피신청인의 경매신청으로 20○○. ○. 이후 파계가 되었지만,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○○. ○.까지 계금을 납부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○○○만 원의 계금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5. 피신청인의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음을 기화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20〇〇타경〇〇〇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.(소갑 제5호증-강제집행개시결정)
- 6. 청구이의의 소제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우선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에 20○○가단 ○○○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(소갑 제6호증-소제기증명원)



#### 7. 잠정처분의 신청

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, 제46조에 의하여 잠정처분으로서 위 청구이의 의 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### 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의 1, 2 각 어음공정증서

1.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각 무통장입금증

1. 소갑 제3호증 계원카드

1.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소갑 제5호증 강제집행개시결정

1. 소갑 제6호증 소제기증명원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법원(청구 이의의 소의 관할은 집 행권원에 따라 다름)	제출기간	강제집행 개시 후부터 종료 전까지
게 츠 ㅂ 스	(※ 아래 참조)	키러버기	미기기체비 제40기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46조
	•청구이의의 소제기를 전제로 한 잠정처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		
불복절차	불복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,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		
및 기간	500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, 특별항고만 할		
	수 있다고 함(대법원 2001. 2. 28.자 2001그4 결정)		
비용	·인지액 : 1,000원(로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	・송달료 : 당사자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3회분		
기 타	・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(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		
	제2항)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		
	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		
	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, 위 명령에		
	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		
	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		
	있을 뿐,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		
	립하여 불복할 수 없음	(대법원 2001	. 9. 3.자 2001그85 결정).

#### ※ 집행권원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

- 1. 판결·심판 :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(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, 제45조)
- 2. 지급명령 :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(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)
- 3. 집행증서 :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(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)
- 4. 소송상의 화해, 인낙조서 : 제1심의 수소법원(민사집행법 제57조, 제44조) 항소심(고등법원)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.
- 5. 제소전 화해조서, 조정조서 :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 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. 항소심(고등법원)에서 조정이



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.

6. 채권표 : 확정판결에 준하여 그 파산채권표가 성립한 지방법원(파산법 제259조)